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36
----------	------

제출년월일: 2021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선출기한 및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기 명시되어 있는 것을 중복 규정한 반면 ‘유치원규정’에 대한 심의 근거는 미비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 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이 이동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투표를”을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로 수정(안 제4조제1항)

- 나.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위원 선출이 가능하며, 기한내에 선출이 어려운 경우는 선출기한 조정 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제6항)
- 다. 재난 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공백이 없도록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임기 연장 가능 조항 신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 라.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유치원규칙”을 “유치원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규칙 외의 유치원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및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이동 반영
- 마.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먼저 시행하고 사후에 지체없이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1)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위원회 선출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시정명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민주시민생활과 협의 완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2) 입법예고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별첨 3], 재입법예고 생략 공문[별첨 3-1]

※ 기 입법예고(2020.7.16. ~ 8.4.)이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집행(조문이동)에 해당되어 재입법예고 생략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4]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별첨 5]

5)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첨 6]

6) 관계법규: 별첨 7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자투표를” 을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 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 학부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신, 우편, 전자 투표 등을 이용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선출이 어려울 때에는 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4조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 을 “위원장”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5” 를 “영 제22조의6”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치원규칙” 을 “유치원규정” 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치원장” 을 “원장” 으로, “영 제22조의10” 을 “영 제22조의10제1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장은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22조의7제1항” 을 “영 제22조의4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영 제22조의7제2항” 을 “영 제22조의4제2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 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되 서신, 우편, <u>전자투표를 이 용하여 선출할 수 있다.</u></p> <p>② ~ ⑤ (생 략) <u><신 설></u></p>	<p>제4조(위원의 선출 등) ① ----- ----- ----- -- <u>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 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투표 등을 ---.</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 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 모 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 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서 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 여 선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선출</u></p>

현행	개정안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 ③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u>영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u>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p> <p>제10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u>영 제22조의5</u>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유치원규칙</u>의 제·개정 2. ~ 4. (생략) ② (생략) 	<p><u>이 어려울 때에는</u> <u>선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u></p> <p>제6조(위원의 임기)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4조제6항 후단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u>위원의 임기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u></p> <p>⑤ <u>제4항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u>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u> <u>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부위원장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u></p> <p>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u>위원장</u>-----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0조(심의사항) ① ----- ----- -----<u>영 제22조의6</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유치원규정</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11조(보고 등) <u>유치원장</u>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u>영 제22조의 10</u>에 따라 시행 전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11조(보고 등) ① <u>원장</u>----- ----- -----<u>영 제22조의10제1항</u> ----- ----- -----.</p> <p>② <u>원장</u>은 <u>영 제22조의10제2항</u>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u>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u>해야 한다.</p>
<p>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u>영 제22조의7제1항</u>에 따른 회의록은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와 회의록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u>영 제22조의7제2항</u>의 단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u>영 제22조의4제1항</u>----- -----.</p> <p>② ----- ----- ----- -----<u>영 제22조의4제2항</u>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별첨 2】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는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사 김성민 (02-3999-155)

【별첨 3】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예시)(제14조 관련)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별첨 3-1】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관련 :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 계획(안)
(유아교육과-8608, 2020.10.16.)
2.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제외 대상: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나.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1부. 끝.

★장학사	김성민	유아생활교육담당 장학관	오경미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교육정책국장	전결 2020.10.22. 강연홍
협조자							
시행	유아교육과-8760	()	접수	(
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http://www.sen.go.kr
전화	02-399-9155	/전송	02-399-9763	/toy0531@sen.go.kr	/비공개(1)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이지은
입안주관부서	유아교육과	통보일	2020.11.2.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10 개정 사항을 반영해 위원선출 방법 중 ‘전자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타당함 - 또한 운영위원의 임기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재난 시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선출기한을 조정하고 전임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절차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u>“원안동의”</u>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0A서울교육034			
정책명	서울특별시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유아교육과		
	담당자명	김성민	전화번호	02-3999-155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신지은	전화번호	02-399-39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10월 26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10월 28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10월 30일</p>				

【별첨 6】

자치법규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유아교육과	담당자	성 명 : 김성민 직 급 : 장학사 연락처 : 02-3999-155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해당조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상황 발생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임기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령(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당 개정조항에 대해 원안 동의 의 의견을 제출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권고 <input type="checkbox"/> 중단권고
해당조항	참고의견		
조례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의 창의적 실시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것(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으로 학생인권과의 연관성이 없음이라고 볼 수 없음 - 예컨대, 7조 위원의 의무 등에 위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학생인권조례 제1조)와 같이 비록 선언적 이라 할지라도 위원이 원아의 인권증진의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최근 개정된 유아교육법을 조례 개정안에 반영토록 권고함 - 예컨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나 조례의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음 - 조례 제10조에서는 법과 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기 제시된 심의사항이 법과 령에서 언급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 등이 있어 이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별첨 7】

관계법규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

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3.>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⑦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3., 2020. 4. 7.>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6으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7. 28.>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4는 제22조의5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6은 제22조의7로 이동 <2020. 7. 28.>]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유치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③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각각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4. 7.>

[본조신설 2012. 8. 31.]

[제목개정 2020. 4. 7.]

[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0은 제22조의11로 이동 <2017. 6. 13.>]

제22조의12(시정명령) 관할청은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22조의12는 제22조의13으로 이동 <2020. 4. 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